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4대강 사업과 현행 제도의 검토에 대한 토론문

김 홍 균*

이순자 박사의 연구 성과 및 발제에 많은 동감을 표하면서 주제와 관련하여 저의 생각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준설물질 또는 준설토사의 법적 지위 여하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량의 준설토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법적 지위가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염된 퇴적물·준설토사가 폐기물인지, 토양인지에 따라 관련 근거법이 달라지고, 그 결과 처리 기준·방법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적물 자체는 폐기물이 아니지만 퇴적물이 수거 또는 준설된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수거된 퇴적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취급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건설공사, 준설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염되지 아니한 준설토사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개념 정의인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물이 아니라고 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준설물질이 5톤 이하 발생한 경우에는 명문상 사업장폐기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오염된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준설물질이 법논리적으로 폐기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준설과정에서는 준설토사뿐만 아니라 오니, 중금속, 유기물질 등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양한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준설품질이 토양이라는 등식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물질을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관리·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일법 제정이 어렵다면 차제에 「폐기물관리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준설토사를 자원으로 이해하고, 성질, 처리방법 등이 폐기물과 다른 특징이 있으며, 폐기물로 이해할 경우 자칫 오염된 토양의 정화유인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2.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한다면 굳이 4대강 사업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의해서도 수질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박사님이 생각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3. 수질관련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여하

주요 수계에서 획기적인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접근방법인, 비용·경제적으로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배출권거래제도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수계 중심의 수질관리에 기초하여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수질관련 배출권거래제도는 역사가 짧고 대기분야에서의 배출권거래제도와 달리 활발하지는 않지만, 농지에 살포된 비료 및 농약, 토양침식물, 축사유출물, 교통오염물질, 도시지역의 먼지와 쓰레기, 자연동·식물의 잔여물, 대기오염물질의 강하물 등과 같이 도시·농지·산지·도로·공사장 등에서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이른바,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의 규제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질관련 배출권거래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논란이 심한 제도이

기 때문에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